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일련번호 : /총 건)			
원 공 사 개 요			
①공 사 명			
②발 주 자 명			
③해 당 공 종		④세부공종	
⑤공 사 지 역			
⑥도 급 종 류		⑦공사기간	
⑧공 사 발 주 방 식		⑨총공사금액 (백만원)	
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			
⑩계 약 명			
⑪발 주 자 분 류			
⑫사업관리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그 밖의 계약형태	⑬계 약 일	. . .
⑭사 업 관 리 개 시 일	. . .	⑮사업관리만료일	. . .
⑯계약 및 기성금액 (백 만 원)	총계약금액		
	지분액및비율	(%)	
	기 성 금 액	누 계	
		전 년 도	
⑰대 가 지 급 방 식			
⑱업 무 범 위			

* 기재요령

③해당공종: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세부공종: 아래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토 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댐, 항만, 운하, 치수·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건 축	단독주택·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차고·터미널건물, 공장·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산업·환경설비	제철소·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조경공사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⑤공사지역: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⑥도급종류: 도급공사, 자기공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공사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분리입찰, 그 밖의 발주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발주자분류: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민간부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발주자
제조업	비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의복 제외) 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인쇄·기록매체복제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의료용물질·의약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제품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국·공립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사업자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의 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주한외국기관 해외외국기관

⑩대가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그 밖의 방식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로서 주요과업내용을 적습니다.